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8일,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변안의 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정헌의원)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

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지능 관련 R&D 예산의 배분·조정 주체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인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고,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단일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